



인천광역시의회



받는곳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 조

제 목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1부. 끝.

2012년 11 월 일

발의자 : 강 병 수 의원 (인)

찬성자 : 인

(찬성자서명부 붙임)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강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2. . .

발 의 자 : 강병수 의원
(찬성자 인)

1. 제안이유

- 가. 핵가족화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환자가 있는 가정은 간병 부담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나. 따라서,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관내 의료기관을 사업대상으로 지정하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식사 보조 및 위생·청결 등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책사항 1부.
- 나.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입원 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절차 및 방향
2. 세부적인 추진계획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4. 간병사 근무 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건강보험가입자를 지원할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내 의료기관을 사업대상으로 지정하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지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천 대상에 있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③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방법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사 인건비

2. 간병사 교육 및 운영비

3. 그 밖에 입원환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 ②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최장 15일까지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한 차례만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 지정된 의료기관은 간병사의 운영에 책임이 있으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④ 지정된 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간병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간병사의 자격 등) ① 간병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2. 요양보호사
 - 3. 간병사 교육을 수료하고 간병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② 간병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간병사의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2.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또는 허위로 간병사 운영을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인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사업 관련 담당국장
3.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보건의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의료

기관에 보조금 집행, 간병사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조금 관리) ① 시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지정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의료법 - 제3조(의료기관)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의료법 】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5조(사업대상 등)

- 사업대상 기관수에 따라 간병인 인건비 결정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대상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정

○ 사업대상 의료기관별 4실(1실당 4명기준으로 추계)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기준적용

○ 세입추계는 무료이용대상 확대로 간병서비스 세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

- '12년도 상반기 병실가동율 92%

나. 추계 결과

○ 운영병원(3개병원)

○ 산출기초

-1,825,666원×16명×12월×3개병원=1,051,583,616원

-1인당 월 관리비 32,501원 포함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3 년)	2차년도 (‘14 년)	3차년도 (‘15 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인건비 및 관리비	1,051,583	2,453,695	3,154,750	6,660,028
	소계	1,051,583	2,453,695	3,154,750	6,660,028
재원 조달		시비 100%	시비 100%	시비 100%	시비 100%
국 비					
시비	소 계	1,051,583	2,453,695	3,154,750	6,660,028
	일반회계	1,051,583	2,453,695	3,154,750	6,660,028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서명날인부

의안명 :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연번	의원명	서명	연번	의원명	서명
1			19		
2			20		
3			21		
4			22		
5			23		
6			24		
7			25		
8			26		
9			27		
10			28		
11			29		
12			30		
13			31		
14			32		
15			33		
16			34		
17			35		
18			36		